

第 28 回達西區議會(臨時會) 議會本會議會議錄(附録) 第 2 號

大邱直轄市達西區議會事務課

目 次

1. 大邱直轄市達西區議會公印條例中改正條例(案)..... 30 面

2. 大邱直轄市達西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關한條例(案)..... 33 面

3. 9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(案)..... 42 面

• 以上3件 審査報告書 - 內務委員長 禹勝基

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94. 9. 8

내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달서구청장
- 나. 제출일자 : 94. 8. 31
- 다. 회부일자 : 94. 8. 31
- 라. 상정일자 : 94. 9. 7

2. 제안설명요지(설명자 : 총무과장 김치권)

가. 제안이유

세무자동차 민원실 설치에 따라 세무민원 창구가 이전됨에 따라 행정 능률화와 대시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구청의 세무민원전용 구청장 직인을 신조코자 함

나. 주요골자

구청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장 세무민원전용 직인을 신조함(별표3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백창기)

본 조례 개정은 세무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행정의 능률화와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세무 민원 전용 직인을 신조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토론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반대 : 없음

4. 첨부 :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(안)1부

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 (안)

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중 “민원실” 다음에 “세무민원”을 삽입한다.

[별표 3] 중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		2.1cm	
		세 무 민 원	5mm
2.1cm		대구직할시달서구청 장 의 인	
		전 용	5mm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 (안)
<p>제2조(공인의 비치사용)</p> <p>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비치사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이 <u>민원실</u>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</p> <div data-bbox="236 824 746 1236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	<p>제2조(공인의 비치사용)</p> <p>③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u>민원실, 세무민원</u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p> <div data-bbox="794 1303 1305 1720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/div>